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관련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대응 안내서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목 차

Ⅰ. 개요

1. 목적
2. 기본방향
3. 코로나19 관련 기본 정보

Ⅱ.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준비

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계획
2. 예약 시 유의사항
3. 시설 · 비품 점검 및 배정 · 배치
4. 주변 시설 확인 및 협력 체계 구축

Ⅲ.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진행

1. 참가자 맞이
2. 프로그램 진행
3. 참가자 자유 행동에 대한 지침 제공

Ⅳ. 유증상자 발견 · 발생 시

1. 유증상자 판별
2. 유증상자 발견 · 발생 시 행동 요령

Ⅴ. 프로그램 종료

1. 시설 소독
2. 물품 세탁 및 소독
3. 숙소 청소

Ⅵ. 사후 처리

1. 참가자 정보 관리
2. 유사시 협조

Ⅶ. 안전매뉴얼_질병관련 사례 응급처치법

[붙임]

1. 자가문진표 양식 1부.
2. 환자 및 치료 관리 방법(질병관리본부 자료) 1부.
3. 소독 관련 법적 근거 및 조치사항 1부.
4. 개인보호구 착 · 탈의 및 손위생 방법 1부.
5. 일상 소독 방법(예시) 1부.
6. 확진자 운송 차량의 청소 · 소독 1부.
7. 코로나19 살균 · 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 1부.
8. 치아염소산나트륨 사용시 주의사항 1부.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3.2) 1부.

I

개요

1. 목적

- 최근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로 인하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음.
- 본 운영 지침을 시행함으로써 각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코로나19와 관련한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염 발생 시 운영사찰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하 문화사업단)이 함께 조직적이고 통합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이를 통하여 템플스테이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운영사찰의 청정한 수행환경을 보전하며, 혹시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템플스테이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2. 기본 방향

- 각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템플스테이 준비, 진행, 종결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각 운영사찰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대응 관련 기본 역량을 강화함.
- 각 템플스테이 운영사찰과 문화사업단이 공동의 지침에 근거한 통합된 매뉴얼을 공유하여 사고 발생 시 조직적이고 통합적이며 일관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함.

3. 코로나19 관련 기본 정보

코로나19 감염 증상

- 발열(37.5℃ 이상) 및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발생함.
- 폐렴(기침, 가래, 호흡곤란, 설사, 구토, 두통, 피로감 등) 중증 증상도 있을 수 있음.

코로나19 잠복기

- 1~14일 (평균 4~7일)

사례 정의

- 확진자(Confirmed case)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疑似患者) :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 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이하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불명의 폐렴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
-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국내의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전염 방식

-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飛沫)[1]을 직접 흡입하거나, 비말이 묻은 물건 등을 손으로 만졌을 때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음.
- 특히 비말이 묻은 손으로 얼굴(특히 눈, 코, 입)을 만질 경우 감염의 위험이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

-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는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물체의 표면상에서 생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됨.
- 환자가 이용한 공간의 물체 표면을 청소, 소독하는 것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코로나 계열의 질환 및 기타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관련 용어 정의

- 청소(세척), Cleaning) : 표면에서 미생물을 포함한 먼지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청소 후 감염성 미생물이 불활성화되지는 않으나 그 수가 감소하여 감염 확산 위험이 감소
- 소독(Disinfection) : 생생물체가 아닌 환경으로부터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액체 화학제나 습식 저온 살균제를 도포하거나 100℃의 물로 필요한 시간만큼 삶음으로써 이루어짐. 청소 후 표면에 남아있는 감염성 미생물을 제거하면 감염 확산 위험이 더 감소함.

1) 비말(飛沫) : 표면에 날아 흩어지거나 튀어 오르는 물방울

Ⅱ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준비

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계획

• 프로그램 세부사항 준비 시 유의사항

- 해당 운영사찰의 숙소, 프로그램 실, 법당의 크기 등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인원을 명확히 산정(“3. 시설·비품 점검 및 배정·배치” 참조)하고 이에 맞게 프로그램을 계획함.
- 프로그램 계획 시 운영자와 참가자간, 또는 참가자 상호간의 신체접촉이나 비말(飛沫)이 전달되기 쉬운 밀접한 접촉이 있는 프로그램은 금지함.
- 프로그램 계획 시 프로그램 진행 장소는 환기가 잘 되는 곳 또는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하도록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도록 함.
- 프로그램 종료 후 본 지침서 “1. 시설 소독” 및 “2. 물품 세탁 및 소독”이 이루어진 뒤 다른 참가자가 해당 장소(숙소나 프로그램 진행 장소)에 입실하거나 장소를 사용하도록 프로그램 간에 충분한 시간 간격(최소 2시간)을 설정하여야 함.

  * 붙임 3~8. 참조

2. 예약 시 유의사항

• 예약자 정보 확인

- 해당 예약자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여 유사시(유증상자 발생 등으로 인한 예약 취소 또는 변경 등) 연락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대비함.
- 예약자에게 필요 물품(감염 예방 물품 등)을 미리 자세히 안내하여 운영사찰이 제공하지 않는 필요 물품을 반드시 예약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예약자에게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스스로 관찰하게 하고, 해당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사찰에 연락하고 미리 템플스테이에 참가하지 않도록 안내함.
- 예약자 중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기타 보건 당국의 지침에 따른 자가 격리 대상자가 있다면 템플스테이에 참가할 수 없음.

• 예약 홈페이지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등록 시 유의사항

- 해당 프로그램의 적정 인원에 맞게 모집 인원을 정하여 예약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 ‘프로그램별 유의사항’, ‘참가자 준비 및 점검 사항’, ‘참가자가 사찰에 도착했을 때의 동선과 감염병 예방 행동 요령’을 운영사찰에 맞게 명확히 정리하여 함께 게시함.

- 코로나19 관련 방역 당국의 발표와 문화사업단이 시행하는 지침 등을 예의주시하여 상황에 맞게 예약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함.

3. 시설·비품 점검 및 배정·배치

• 참가자 숙소

- 참가자에게 제공할 숙소는 배정 이전에 깨끗이 청소, 소독되어야 함(“Ⅴ. 프로그램 종료” 참조).
- 숙소는 1인 1실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가족 단위 참가자는 경우 예외로 함).

  * 불가피하게 여러 인원을 한 숙소에 배정하는 경우 최대 인원이 1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참가자별 침구 간 이격거리가 2m 이상 충분히 확보되도록 함.

- 개별 화장실 및 세면(샤워) 시설이 갖추어진 숙소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화장실 및 세면(샤워) 시설이 없는 숙소는 되도록 배정하지 않음.
- 개별 화장실 및 세면(샤워) 시설이 없는 숙소를 배정하여야 하는 경우 공용 화장실 및 세면(샤워) 시설을 이용하는 참가자들의 동선과 시간을 고려하여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의 수를 최소화하여야 함.
- 각 숙소에는 손소독제와 비누, 화장지를 필수 배치하여 참가자가 수시로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 별도의 격리 시설로 이용할 숙소를 미리 정하여 두고 이를 비워두어 유사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유증상자 격리 숙소의 요건

  - 사찰 내 모든 스님 및 종무원 등의 이동 동선과 동떨어진 곳에서 격리가 용이한 건물을 격리 숙소로 함.
  - 격리 숙소 내에 별도의 화장실과 세면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 유증상자 이송 시 차량 또는 이동형 침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격리 숙소로 함.
  - 격리 숙소에는 유증상자에게 제공할 긴급 식량(생수와 빵, 초콜릿 등 간편 식품)을 구비하여 두어야 함.

• 참가자 개인 물품

- 참가자가 템플스테이 기간 동안 사용할 개인 물품(칫솔, 면도기, 빗, 수건, 필기구 등)은 개인이 준비하도록 함.
- 가능하다면 참가자가 식판과 같은 개인 식기를 가져와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 침구, 수련복 등 지급이 불가피한 물품은 “Ⅴ. 프로그램 종료”의 내용에 따라 수거, 세탁, 소독함.

• 템플스테이 진행 등 활동 장소

- 참가자를 맞이하는 장소, 사찰 안내 등 템플스테이 진행과 관련한 장소는 되도록 실내가 아닌 실외 또는 누각과 같이 실외에 준하는 장소로 함.
- 불가피하게 실내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참가자 간 2m의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넓고, 창호와 방문의 개방이 용이하여 환기가 잘 이루어지는 공간을 선정하여야 함.
- 활동 장소에는 반드시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담당자와 참가자가 수시로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함.
- 실내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종료 시 즉시 해당 공간에 대한 청소와 소독을 시행함.

• 공양 장소

- 공양 장소는 가능하면 개별 장소에서 공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함.
- 공양 장소의 개별 제공이 불가한 경우에는 공동 공양소를 이용하되 참가자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공양소 내에서 타인 간 접촉 경우 수를 최소화하고, 개인 간 이격거리(2m)를 충분히 확보하며, 서로 마주보지 않고 공양할 수 있도록 동일 시간 내 공양 인원의 수와 공양 위치를 조절하여야 함.
- 공양 장소에서 배식을 할 때 줄을 서야 한다면 각 개인 간 이격거리가 준수되도록 현장에서 지도하여야 함.
- 공양장소에입장하는참가자가반드시손을씻거나소독할수있도록동선을조정하고손소독제를비치함.
- 공양 이후 사용한 식기는 깨끗이 설거지하고 소독하여 관리함.

• 기타 사항

- 숙소 및 활동 장소, 공양 장소, 주요 동선 등에 손소독제 등을 미리 비치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필요 홍보물을 부착함.

4. 주변 시설 확인 및 협력 체계 구축

• 인근 의료 · 보건 시설 관계 구축

- 인근에 있는 의료·보건 시설의 위치, 연락처, 주요 담당자 등을 미리 확인하여 유사시 연락, 이송할 수 있도록 준비함.
- 해당 지자체(시/도, 구/시·군)의 방역 담당자를 미리 확인하고 유사시 협력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호 관계를 형성함.
- 유증상자 발견을 대비하여 주변의 코로나19 검사소를 확인하여 두고, 가능한 이송 방법을 미리 정하거나 확인하여 두어야 함.
- 주변의 음압 병상[2)]이 있는 의료시설을 확인하여 두고, 긴급 연락처를 확보함.
- 유사시 총괄 대응을 지휘할 대응 총괄 담당자와 관련 시설, 기관 등에 연락할 연락 담당자를 정하여 둠.

• 사찰 내 · 외 긴급 연락망 구축

- 사찰 내 관계자(주지스님, 주요 담당자 및 관련자)간의 긴급 연락체계를 정하고 이를 사찰 내 모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사찰 외에 긴급 이송 관련 기관 등과의 비상 연락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유사시 문화사업단에 반드시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상황의 경과를 공유하여야 함.
-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문화사업단에 문의하거나 협의하여 정하고 시행하도록 긴급 연락처를 확인하여 둠.

2) 음압 병상(陰壓病牀) : 병원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 병실

Ⅲ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진행

1. 참가자 맞이함

• 참가자를 맞이하는 요령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시행

- 예약자가 참가하기 전(최소 1일 전)에 예약자에게 연락하여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확인함.
- 템플스테이 진행자는 방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참가자 접수 장소에 손소독제, 체온계를 비롯한 필요한 물품을 모두 갖추어 참가자를 맞이하도록 함.
- 운영인력은 참가자를 맞이함부터 참가자가 사찰을 떠날 때까지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참가 당일에는 참가자 도착 즉시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유무를 확인함.
  · 체온계로 체온 점검
  · 자가문진표(첨부1 참조) 작성 및 점검
  · 유증상자 발견 시 즉시 조치(8쪽 유증상자 발견·발생 시)
- 참가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미리 정하여 둔 원칙에 따라 숙소를 배정함.
- 참가자에게 필요 물품 준비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 미리 해당 물품을 제공함.
- 참가자에게 공양 시간 및 방법, 예불 등 원하는 의식에 대한 참여 요령을 미리 설명하고 방역 지침 준수를 요청함.

•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는 본 지침서의 "Ⅳ. 유증상자 발견 · 발생시" 지침을 따라 처리함.

• 모든 참가자에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2. 프로그램 진행

• 매일 기상, 세면 직후 아침 공양을 하기 전, 또한 저녁 공양 직전 또는 직후 등 하루 2회 이상 운영인력(진행 강사 등 포함) 및 참가자를 대상으로 발열 의심 증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여럿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사찰 안내, 참가자 생활 안내 등)을 진행할 시에는 프로그램 참가자 수와 장소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함.

- 개별 참가자 간 이격거리(2m)를 유지하도록 유의함.
- 실내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실외, 또는 실외에 준하는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함.
- 차담이나 사경과 같이 공동의 물품(찻잔, 붓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소독을 완료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은 재사용하지 않도록 함.

- 개별 휴식 시간 중에 법당 등에서 예불, 기도를 원하는 경우 실무자에게 사전 참여 희망 의사를 표시하도록 안내하고, 이때 실무자는 해당 장소의 방역 상태와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 및 판단하여 안내함. 해당 장소를 이용할 때에는 참가자가 반드시 개인 간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함.

•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진행자와 참가자가 자주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

•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 경우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해당 참가자가 지참하여 혼자 사용하도록 하며, 다른 참가자나 일반 참배객과 공유하지 않도록 함(예: 수건, 방석, 법요집 등).

3. 참가자 자유행동에 대한 지침 제공

• 참가자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명확히 정하여 참가자에게 안내하여 참가자가 사찰 내에서 참가자 이외의 사람들과 섞이는 일이 없도록 함.

• 참가자는 자유행동을 하는 시간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함.

• 참가자가 자유행동을 통하여 예불, 기도 등을 할 때에는 되도록 일반 참배객이나 사찰 내 스님 및 종무원들의 동선과 겹치지 않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일반 참배객이나 사찰 내 스님 및 종무원들과 함께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 간 이격거리(2m)를 준수하도록 지도함.

Ⅳ

유증상자 발견·발생 시

1. 유증상자 판별

• 모든 참가자에 대하여 '기상 후 아침 공양 전, 저녁 공양 직전 또는 직후' 등 하루 2회 이상 체온기 등을 활용하여 위의 증상 유무를 확인함.

• 참가자가 37.5℃ 이상의 발열, 지속적인 기침, 인후통 또는 호흡곤란 등 호흡기 질환의 증세를 보이면 유증상자로 판별함.

• 유증상자가 발견되었을 때 지나치게 큰 소리로 이를 주변에 알리거나 놀라는 행동은 자제하여 해당 참가자가 놀라지 않도록 하며, 차분히 응대하고 안내하여 참가자가 안심하고 실무자의 조치를 따르도록 함.

2. 유증상자 발견·발생 시 행동 요령

• 격리 조치

※ 진행자는 격리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증상자와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감염 예방에 유의하여야 함.

- 유증상자에게 해당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다른 증세가 없는지, 증상이 시작될 때쯤부터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하여 상황을 간단히 파악함(이때 유증상자가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 머물게 하거나 질문 시간이 길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며 즉각적인 격리 조치가 시행되도록 함).

- 상황 파악 직후 해당 참가자에게 코로나19 유증상자이기 때문에 잠시간 격리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함.

- 해당 유증상자는 격리 숙소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함.

-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 또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숙소로 돌아가 머물도록 조치함.

- 해당 유증상자와 밀접히 접촉한 운영인력이 있으면 역시 숙소로 이동하여 스스로 격리하고 대기하도록 함.

• 신고 전화

- 유증상자의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면 방역 당국(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미리 확인하여 둔 해당 지역 보건 기관에 전화하여 유증상자를 발견하였음을 알리고 해당 기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

- 유증상자 발생 사실을 사찰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고, 문화사업단에 유증상자 발생 정황과 방역 당국과의 통화 성공 여부, 시행한 조치 내용을 상세히 통보함(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02-2031-2030~2036).

- 되도록 해당 기관에서 보내는 교통수단을 통하여 유증상자를 이송하도록 조치하고 방역 당국의 지시에 적극 협조함.

- 실무자와 사찰 내 방역 담당자와 협조하여 ①내부 보고, ②방역 당국 연락, ③문화사업단 통보 관련 조치가 동시에 또는 연이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함.

• 폐쇄, 2차 격리 조치

- 유증상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가능하면 사찰 전체, 불가능하면 템플스테이 관련 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여타 인원의 접근을 차단함.
- 유증상자와 접촉한 실무자, 사찰 내 사람들을 전체를 파악하여 숙소에서 스스로 격리토록 조치함.

• 이송 후 조치

- 세탁 및 소독 요령은 본 지침서 "Ⅴ. 프로프램 종료"의 '1. 시설 소독'과 '2. 물품 세탁 및 소독'을 참조함.
- 유증상자 이송 후에는 격리 장소, 관련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2일 동안(또는 24시간) 사용을 금지함.
- 유증상자 격리 장소는 이송 후 30분 이상 환기를 시행한 후 소독을 시행함.
- 소독 후 유증상자가 사용한 개인물품은 수거하여 폐기하고, 침구 등은 안전하게 수거하여 세탁 및 소독을 시행함.
- 유증상자와의 밀접접촉 등으로 가자격리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 기관의 지시에 따라 자가 격리를 시행함.

Ⅴ

프로그램 종료

1. 시설 소독

• 참가자가 귀가 직후 참가자가 사용한 숙소, 활동 장소, 참가자가 드나든 사무실 등에 대한 소독을 시행함.

- 소독을 시행하는 자는 마스크, 고무장갑, 고글, 장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방법에 맞게 착용 후 소독을 시행함.
- 소독은 해당 장소에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고, 30분 이상 환기를 시행한 후 시행함.
- 문고리, 문틀, 창문, 세면대, 거울, 샤워기, 숙소 내 가전제품 등 주로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곳을 중점적으로 소독하되, 천(타올)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하여 적신 후 표면을 닦음.

• 소독 시행 후 충분히 환기를 시켜 소독액이 모두 마른 뒤에 개인물품, 침구 등을 수거함.

2. 물품 세탁 및 소독

• 위의 시설 소독을 진행한 후 수거된 물품 중 폐기할 물품은 바로 폐기하고 침구, 방석, 수련복 등 재활용할 물품은 바로 뜨거운 물에 삶아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 소독함.

• 유증상자가 사용한 물품은 다른 물품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수거하고 별도로 세탁, 소독함.

• 세탁이 어려운 물품은 실외에서 햇볕에 30분 이상 충분히 노출시키고, 다시 소독액으로 소독한 뒤 사용함.

3. 숙소 청소

• 시설에 대한 위 "1. 시설 소독"의 소독이 종료된 후 청소를 시행함.

- 청소 과정에서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함.
- 되도록 빗자루질 등 먼지나 세균이 날릴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지양하고 걸레 등으로 청소 시행함.

4. 환경소독제 선택

• 코로나바이러스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 WHO, ECDC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로 환경부 승인 · 신고제품을 사용하며 제품별 사용량 · 사용방법 · 주의사항준수

- 소독제 목록 및 정보제공 : 환경부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 소독제의 제품설명서 사용방법이 분무/분사 방식인 경우,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을 닦음

〈 소독제 주요 성분별 유효농도 · 접촉시간 · 적용대상 〉

분류	대표 유효성분	유효농도	표면 접촉 시간	적용대상
염소계 화합물	차아염소산나트륨 (일명 가정용 락스)	0.05% (500 ppm)	5분 이상 (ECDC 참고)	·일상 표면소독
		0.1% (1,000 ppm)	1분 이상 (WHO 참고)	·일상 화장실 소독 ·환자이용공간 표면 및 화장실 소독
		0.5% (5,000 ppm)		·환자 혈액 및 체액 소독
알코올	에탄올	70% ~ 90%	1분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이소프로판올	50%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4급암모늄 화합물	벤잘코늄염화물	0.05% ~ 0.5%	10분 이상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과산화물	과산화수소	0.5%	5분 이상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페놀 화합물	클로록실레놀	0.12%	30초 이상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 [붙임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

•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식품, 식품용 기구 등 의 살균 · 소독제(식품첨가물)는 사용 용도에 적합한 소독제 선택

-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 지정) 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환경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

① 환경부의 승인 · 신고 제품 여부 등 정보 확인 후 소독제 선택

*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② 환경소독제 사용시 유효기간 확인, 제품별 안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액 준비

* 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 대상 등

③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사항 참조(붙임 8)

* 소독 직전에 희석하여 준비하고, 농도별 표면 접촉 시간은 5페이지 참조
* 암모니아 또는 다른 소독제와 혼합 금지

④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 · 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소독제의 제품설명서 사용방법이 분무/분사방식인 경우,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하여 적신 후 표면을 닦음

⑤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에 유의할 것(붙임 7, 8)

⑥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지 말고,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않으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⑦ 시간이 지나면 소독 효과가 감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바로 사용하며 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바로 폐기

⑧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관 장소, 보관 방법에 주의

5. 소독 시 주의사항

• 방수성장갑,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방수성긴팔가운, 방수성앞치마, 막힌신발, 장화, 고글 등 상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방법에 맞게 착용

* [붙임 4]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손위생 방법

• 개인보호구 착용 후 소독 중에는 눈, 코와 입을 만지지 말 것.

- 고글을 착용하여 손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함

• 장갑이나 마스크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된 경우 안전하게 제거하고 새것으로 착용하여야 함.

- (탈착 순서 참고) 장갑 제거 → 비누 손 세정 → 마스크 제거 → 비누 손 세정 → 새 마스크 착용 → 새 장갑 착용

6. 소독 후 주의사항

• 청소 및 소독 작업완료 후 모든 개인 보호구에 묻어있는 병원체가 신체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하여야 함.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르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어야 함.

- 재사용 가능한 고글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소독 후 재사용 가능

- 환자 이용공간의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일상 소독의 경우 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

* [붙임 4]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손위생 방법
* [부록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3.2.)

•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 직원에게 소독 후 14일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임상증상
  - 주요증상 : 발열(37.5°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소독 시 체크리스트(예시)】	
☐	소독 범위 설정 : 접촉이 잦은 표면, 확진자 또는 의심자 이동 동선 등
☐	소독 전, 충분한 환기 실시
☐	환경부 승인·신고된 소독 제품 사용
☐	소독제 라벨에 표시된 제조사 사용법 준수 (유효농도, 접촉시간 등)
☐	적절한 개인보호구(PPE) 및 청소용품 준비
☐	소독 전, 눈에 보이는 오염된 표면을 물과 세제(또는 비누)로 청소 실시
☐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 실시
☐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기
☐	충분한 환기 실시

【보행로 등 야외 공간의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권고】

① 보행로, 도로, 학교 운동장, 공원, 실외 놀이터 등의 야외 공간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감소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상적인 청소를 통한 위생 관리필요

* 보행로와 도로 등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저장소로 간주되지 않음

② 과다한 소독제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 증가

③ 본 안내서에 따라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 시행

Ⅵ 사후 처리

1. 참가자 정보 관리

• 혹시 참가자가 귀가한 이후 참가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행될 역학조사를 위하여 참가자에 대한 개인정보, 해당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충실히 확인, 기록하여 둠.

2. 유사시 협조

• 방역 당국, 또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에 충실히 응하도록 함.

Ⅶ.

안전매뉴얼_질병관련 사례 응급처치법

Ⅶ

안전매뉴얼_질병관련 사례 응급처치법

경련

| 경련이란?

- 발작은 뇌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 일어난다.
- 동반된 증상은 뇌의 어느 부분이 영향을 받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

- 뇌전증(원인 불명의 발작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 열사병(heat stroke)
- 중독, 전기 감전, 저혈당
- 소아에서 고열 발생 시
- 뇌손상, 암, 뇌졸중 등

| 발작 증세는?

- **비 운동성 발작 혹은 운동성 발작 직전의 증상**
  - 》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 》 입안에 금속이 들어있는 것 같은 맛이 느껴진다.
  - 》 환각
  - 》 혼동 상태나 의식의 변화
- **운동성 발작**
  - 》 몸이 뻣뻣하게 굳는다
  - 》 얼굴과 사지가 툭툭 튀듯이 움직인다.
  - 》 눈이 상방을 주시하며 고정된다.
  - 》 침을 흘리거나 소변이나 대변을 본다.
  - 》 호흡이 힘들어 지고 의식을 잃게 된다.

• **발작 후 증세**

» 혼동, 기억 상실, 수면 상태

| 응급처치는?

• 환자가 경련을 할 것 같은 전조 증상을 보이면 넘어져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앉히거나 눕힌다.

• 주변의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리에서 떠나도록 요청한다.

• 의복을 느슨하게 해주며, 특히 목 부분에 유의한다.

• 환자가 척추손상을 받지 않았을 것이 확실하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회복 자세를 취해준다.

• 척추손상이 의심되면 주의 갚게 환자의 목, 머리, 몸통을 통나무 굴리는 것처럼 똑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왼편으로 돌려 회복 자세를 취하게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데는 최소 3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

• 119 신고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 경련후 조치는?

• 대부분의 경련은 수분 이내에 종료되지만 경련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 환자가 경련하는 동안 다친 곳은 없는지 살핀다.

• 환자가 경련 후 수면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 경련 환자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

• 경련하는 동안 환자의 손상을 막아야 하지만 환자를 잡아서는 안 된다.

• 환자의 치아 사이로 어떠한 물체도 끼우려 하면 안 된다.

• 환자에게 먹을 거나 마실 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저혈당

| 저혈당 발생원인은?

• 저혈당은 인슐린의 흡수도 변화, 활동앙의 변화, 먹는 습관의 변화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 저혈당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비틀거림

• 갑자기 화를 내거나 분노함

• 창백해짐

•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횡설수설을 함

•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함

• 심하게 땀을 흘림

• 갑자기 떨림

• 두통 혹은 경련

• 울렁거림과 구토

• 심한 경우 의식 소실

| 응급처치는?

• 과일 주스나 캔디, 당분이 든 음료수를 준다(다이어트 음료수는 당분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주스 등의 당분을 제공한 후 10분이 경과해도 증상이 님아 있는 경우 당분이 든 음료수나 식품을 다시 제공한다.

• 15분이 지나도록 증상에 회복이 없으면 119 신고 후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 한다.

• 의식이 없는 경우는 음식을 먹여서는 안 된다.

뇌졸중

| 뇌졸중이란?

- 뇌졸중은 뇌에 분포하는 동맥혈관이 혈전으로 막히거나, 혹은 터지면서 뇌조직으로의 혈액 및 산소공급이 끊겨 발생한다.

| 뇌졸중의 증상은?

- 몸의 편측으로 발생하는 부분적 또는 전체적 마비
- 의식 장애(기억 장애, 의식 혼미, 혼수 상태)
- 경련
- 호흡이나 삼킴 장애
- 안면근육의 마비 또는 표정의 상실
- 두통
- 눈이 한 쪽으로 돌아감

| 응급처치는?

- 의식 정도의 확인
- 기도 유지 및 기도 유지를 위한 조치
- 호흡 획인 및 호흡 보조
- 119 신고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 환자 이송 준비: 마비된 쪽을 아래로 함으로써 환자가 움직일 수 있는 사지를 자유롭게 한다.
  단 마비된 쪽이 손상되지 않게 아래쪽은 묵신하게 한다.
- 환자는 삼키는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음식물이나 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실신

| 실신이란?

- 실신이란 급작스런 뇌혈류 감소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자세를 유지하지 못해 쓰러자는 증상이다.

| 응급처치는?

- 뇌혈류량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앉아 있는 경우에는 머리를 양 무릎 사이로 내리고, 누워 있다면 다리를 올려야 한다 .
- 꼭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주고, 머리를 측면으로 돌려 혀가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한다.
-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노인에게 갑자기 실신이 나타났다면 부정맥 등에 의한 심장성 실신을 의심하고 즉시 119 신고 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 한다.

흉통(급성관상동맥증후군)

| 협심증이란?

- 협심증이란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흉부의 통증이나 불편감을 일컫는 의학적 용어이다.
- 심장의 근육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혈액과 산소 공급을 발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협심증은 언제 발생하는가?

- 협심증은 심장이 더 많은 혈액 공급을 필요로 할 때 종종 발생한다.
- 운동을 할 때나 흥분을 하는 경우, 또는 높은 온도의 상황에서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
- 하지만 그냥 쉬고 있는 중에도 관상동맥의 경련에 의해서 협심증이 발생할 수 있다.

| 협심증의증상은?

- 전형적인 협심증의 증상은 흉부 중앙의 불편한 압박감, 가슴이 꽉 찬 느낌 또는 쥐어짜는 느낌이나 흉부의 통증으로 나타날수 있다.
- 가슴 중앙 부위에서 발생하는 심한 흉통이 턱이나 팔 등으로 뻗치기도 하며 호흡곤란이 동반되기도 한다.
- 차가운 날씨, 식사 후에 통증이 더 빈번하며 아침 시간에 통증이 더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 응급처치는?

- 흉통이 바로 가리앉지 않는 경우는 급성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119 신고 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호흡곤란

| 호흡 곤란이란?

- 힘을 쓰지 않으면 숨쉬기가 어렵거나 숨 쉬는데 고통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 호흡곤란의 원인은?

- 급성 원인으로 불안 / 과호흡증, 천식, 흉부 외상, 심부전 및 폐 부종, 폐색전증, 자발성 기흉, 기도 막힘 등이 있을 수 있다.
- 만성적인 원인으로 기도 폐실질, 폐혈관, 흉막, 흉곽 및 호흡근육 등 거의 모든 폐 관련 질환일 수 있다.
- 호흡기 외의 질환을 원인으로는 심장 질환(심부전, 심장판막 질환, 심근병증, 선천성 심장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빈혈, 비만, 대사성 산증 등이 있을 수 있다.

| 응급처치는?

- 급성 호흡곤란은 생명이 위독한 질환이나 손상 시의 주 증상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 지속적인 호흡곤란시 즉시 119 신고후구급치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발열

| 발열이란?

- 열은 체내의 온도가 구강체온을 기준으로 정상체온(36.8 ±0.7 ℃ 또는 98.2 ±1.3 °F)보다 일시적으로 1-2℃ 정도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 발열의 의미는?

- 발열은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치료할 필요는 없고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 발열에서는 충분한 수분섭취가 중요하다. 발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탈수증은 발열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 응급처치는?

- 적절한 진료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해열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 열을 내리는 기본적인 방법은 체온기준점을 낮추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 해열제를 복용하거나 열 방출을 증가시키는 등의 노력을 시도한다.
- 젖은 수건을 이마에 대는 것도 치료법으로 사용된다.
- 119 신고 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열사병(고온손상)

| 열손상이란?

- 신체가 견뎌낼 수 있는 한계보다 더 많은 열에너지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종류에는 열경련, 일사병(열피로), 열사병 등이 있다.

| 열경련과 이에 대한 응급처치는?

- 열경련은 주로 더운 기후나 심한 운동 후에 나타난다.
- 땀을 많이 흘리거나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을 많이 마신 결과로 신체의 전해질을 변화시켜서 경련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 다리 또는 복부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심한 통증을 나타내게 된다.
- 환자를 그늘진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벗긴 후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
- 경련이 발생한 근육을 스트레징 해준다.
- 입으로 소금이 들어간 찬물(1리터 당 소금 1티스푼 정도) 또는 이온음료를 마시게 한다. 만약소금물과 이온음료가 없다면 일반 찬물을 주어도 된다.
- 만약 경련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한다.

| 일사병과 이에 대한 응급처치는?

- 일사병은 열손상중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더운 곳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였거나, 장시간 햇볕을 쬐면 일어난다.
- 토할 것 같은 느낌과 어지러움, 두통, 경련이 나타날 수 있다.
- 일사병의 원인은 땀을 많이 흘렸으나, 신체가 필요로 하는 양의 수분과 소금을 보충해 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환자를 그늘진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벗긴 후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
- 다리를 핀 상태로 20-30cm 정도 높여준다.
- 입으로 소금이 들어간 찬물(1리터당 소금 1티스푼 정도), 또는 이온음료를 마시게 한다. 만약 소금물과 이온음료가 없다면 일반 찬물을 주어도 된다.
- 스펀지로 찬물을 몸에 적신 후 부채질을 해준다.
- 30분 이내에 증상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 병원으로 이송한다.

| 열사병과 이에 대한 응급처치는?

- 열사병은 흔히 일어나지는 않지만 고열이 신체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 증상으로는 뜨거운 피부(고열), 칙란, 혼미, 혼수 등의 의식 변화, 전신 경련, 빠른 호흡과 맥박수, 그리고 피부가 건조 또는 땀이 날 수 있다.
- 열사병 환자는 몸의 표면보다 중심체온이 상승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겉의 피부만 시원하여서는 근본적 처치가 되지 않는다.
- 혈관이 수축되지 않을 정도의 너무 차지 않은 물로 자지주 닦아주고 바람을 일으켜 열이 증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 상황이므로 신속한 이송이 중요하다.
- 환자의 의식, 호흡, 순환을 확인한다(심폐소생술 참조).
- 신속히 119 신고 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벗긴 후에 똑바로 누인다.
- 환자의 체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 한다:
- 환자의 의식이 회복되면 더 이상의 체온을 낮추는 방법은 시행하지 않는다.
- 체온이 39°C 정도로 떨어진 경우엔 저체온증과 전신성 경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체온을 낮추지 않는다.
- 머리와 어깨는 약간 올려준 상태를 해준다.
- 만약 환자가 전신성 경련을 하는 경우엔 적절한 처치를 시행한다.

저체온증

| 저체온증이란?

- 인체의 중심체온(심부체온)이 35°C이하로 떨어진 상태이다.

| 저체온증의 예방은?

- 야외 활동 시에는 방수와 방풍이 되는 옷을 입는다.
- 모자를 착용하여 머리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보호한다.
- 야외 활동 전에는 반드시 식사를 하고 비상식량을 준비한다.
- 추위가 느껴질 때는 비나 바람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 응급처치는?

- 환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119 신고 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바람이나 비, 눈으로부터 안전하고 따듯한 장소로 이동하여 몸을 보호한다.
-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따뜻한 곳에 환지를 눕히거나 다른 사람의 체온을 나누어준다
-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따뜻한 것을 준비해 마시게 하고 당분이 있는 음식을 섭취 하도록 돕는다.
- 배나 팔꿈치 안쪽, 목 뒤, 손목에 따뜻한 물건을 올려 놓는다. 이곳은 혈관이 피부와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열을 온몸으로 전달할 수 있다.

알레르기

| 알레르기란?

- 집 먼지 진드기나 꽃가루와 같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외부 항원에 대하여 불필요한 면역 반응 즉,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 인체가 외부 자극에 대해 과잉된 반응을 보여서 오히려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할수 있다.
- 가장 대표적으로 두드러기가 있다.

| 예방법은?

- 외부의 꽃가루가 많은 아침과 저역에 실내의 문 닫기
- 야외 활동 시 꽃가루를 걸러줄 수 있도록 고안된 얼굴용 마스크 쓰기
- 실내에서 창문을 닫고,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기
- 다른 환경적 자극물질, 예|를 들면 곤충 스프레이, 담배연기, 공기 오염물질, 타르나 페인트와 같은 것에 불필요하게 노출 되는 것을 피하기
- 가능하면 풀을 깎거나 뜰에서 히는 작업들을 피하기
- 풀밭이 넓은 곳을 피하기
- 손과 얼굴을 주기적으로 씻어서 꽃가루가 코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 선글라스 착용하기(눈으로 들어가는 꽃가루를 막아줄수 있음)

| 응급처치는?

- 가렵다고 긁거나 비비면 더 붓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어 긁지 않는다.
- 너무 가렵다면 얼음주머니를 이용한다.
-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받는다.
- 119 신고 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우울증

| 우울증이란?

- 우울증은 흔한 정신질환으로 마음의 감기라고도 불린다.
- 우울증은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자살이라는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뇌질환이다.

| 우울증에 잘 대처하는 방법은?

- 우선 우울증을 병으로 인식해야 하며, 우울증의 조기 증후를 제대로 일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기분을 흔드는 외적 내적 사건을 인식해야 하며, 우울증 증세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대처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이때 주위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우울증은 잘 치료되는 질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 우울한 환자를 돕는 방법은?

- 우울증의 증상으로 인한 환자의 변화(짜증, 무기력, 지키지 않음 등)를 비난하지 않고 차분히 대회를 나눈다.
- 세심한 배려로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격려해준다.
- 우울증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 섣부른 충고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로 친구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환자를 혼자 두지 않고 운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면 좋지만 너무 강요하면 환자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자살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자세히 묻고 자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한다.
- 필요시 119 신고 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 우울증이 의심되면?

- 우울증 진단은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우울증 치료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상담의 전화(1577-0119)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긴급전화(129)를 통해서도 위기 시 상담이 가능하다.

- 대부분의 시 · 군 · 구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통하면 전문의 상담과 사례관리를 제공 받을수 있다.
- 인터넷상에서는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해피마인드(www.mind44.co.kr)을 통해 우울증에 대한 정보와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 서울광역정신보건센터 위기관리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www.suicide.or.kr)를 방문하면 인터넷 채팅으로 상담을 할 수 있다.

만성질환의 악화

| 만성 질환자 대응법은?

- 만성 질환자의 경우 체험 전에 질환을 파악하고 연락 가능한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 체험자 중 도와줄 수 있는 분(의료인)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도 좋다.
- 만성 질환자가 다니는 병원을 체크해 둔다.
- 급격한 질환 악화 시 이송 가능한 병원을 알아둔다.
- 필요 시 119 신고 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심정지

| 심정지란?

- 의식이 없고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응급처치는?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한다.
-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고 큰소리로 불러본다.
-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한다
- 심폐소생술을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한다.

붙임 1 | 자가문진표(양식)

성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연락처	

	구분	질문	점검	
			예	아니오
1	개인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이 있습니까?		
2	개인	최근 잦은 기침 증상이나 인후통,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습니까?		
3	개인	잦은 재채기, 콧물 등의 감기 증상이 있습니까?		
4	개인	최근 개인적인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나요? (해당하면 기재 → 지역명: / 병원명:)		
5	개인	오늘 날짜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해외로부터 입국하셨습니까? (해당하면 기재 → 국가명: / 입국일:)		
6	주변인	가족 등 함께 생활하는 분들 중에 최근 고열 또는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7	주변인	해외에서 온 가족이나 주변인 또는 동료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8	주변인	가족 또는 만난 지인 중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병원을 방문한 분이 있습니까?		
9	주변인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에게 감기 증상이 있습니까?		
10	기타	최근 보건당국에서 코로나19 관련 연락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11	기타	최근 이슈인 코로나19가 집중 발생한 종교의 집회 또는 모임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까?		

작성일 : 2020년 월 일
서 명 :

붙임 2 | 환자 및 치료관리 방법

질병관리본부(ncov.mohw.go.kr)

1.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

의심환자일 경우,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격리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검체체취가 진행됩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는 자가격리기간 유지(최종 접촉일 기준 14일) 후 격리가 해제되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에는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도 의사환자와 동일하게 격리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검체 채취가 진행되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다만,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는 보건교육(외출 금지, 대중교통 이용 금지, 가족과 동선 겹치지 않기 등)을 받고 증상발현일 이후 14일까지 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할 것을 권고 받습니다.

2. 확진환자 치료 및 지원

한국 정부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고 중증환자는 입원치료를 우선 제공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에 대해서는 자택이나 시설에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증상 모니터링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확진자를 확인하고, 시도별로 구성된 환자관리반 의료진이 확진자 중증도를 4가지(경증·중등도 ·중증·최중증)로 분류합니다.

중등도·중증·최중증 환자 등은 환자상태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기관 등에 치료병상을 배정하여 신속히 입원치료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 는 주로 퇴원기준으로 퇴원한 경증 환자나 무증상 확진자 중 자택에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 입소하여 격리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서는 의료진이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증상 악화시엔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 증상 완화 시엔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퇴소하게 됩니다(약 3주).

생활치료센터는 각 시도별로 국가운영시설, 숙박시설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의료진 및 의료장비(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혈압계, 심폐소생술 세트, 흉부 X선 촬영기 등) 개인구호키트(속옷, 세면도구, 마스크 등) 및 위생키트(체온계 · 의약품)를 지원합니다.

한편, 입원 대기 중인 확진자에게는 전화 상담과 필요 의약품 공급 등 24시간 전담 진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원 대기 환자는 공공기관 자료를 활용해 환자들의 기저질환을 미리 확인하고, 신속하게 중증도를 분류해 입원 치료를 결정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이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고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확진환자는 입원 · 치료비, 의심환자 진단검사비는 전액 건강보험 또는 국비로 지원합니다. 또한 자가격리자나 입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사망 시에는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3. 격리해제

확인확자 중 증상이 있는 경우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됩니다.

임상기준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 증상이 호전된 경우이며, 검사기준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진환자 중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7일째 검사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되며, 확진일로부터 7일째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이후 7일(확진일로부터 14일째) 후에 다시 24시간 간격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2회 음성이 나오면 격리해제 됩니다. 끝.

붙임 3 | 소독 관련 법적 근거 및 조치 사항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 제5호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 (제2항)소독 등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소독의 기준 및 방법) 별표 5 및 별표 6 : 코로나19는 신종감염병증후군 이므로 법령 에서 제시하지 않은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 소독관련 세부사항은 본 지침을 준수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제1항제8호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 제1항제13호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소독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보건소)은 오염된 시설을 관리 · 운영자에게 소독시행 명령 통지

  * 시설명, 소독범위, 소독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소독이행) 소독명령을 받은 시설의 관리 · 운영자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호. 소독의 방법」중 제 5호 소독약품의 사용에 의한 소독을 시행해야 함

  * 보건소장은 필요한 경우 소독실시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 소독명령을 받은 오염된 장소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무 대행자에게 소독시행 후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

  *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서식 11.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

• 보건소장은 소독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소독기준 미준수 등으로 재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독기준에 따라 다시 소독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끝.

붙임 4 |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손위생 방법(WHO, 2020)

개인보호구 착용 순서

	1. 손 위생을 시행한다. -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40~60초간 손 씻기 - 또는 알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20~30초간 손 씻기
	2. 가운을 입는다.
	3.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이상)를 착용한다.
	4. 고글이나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
	5. 장갑을 끼고 옷소매 위를 덮도록 주의하여 착용한다.
	개인보호구 착용 완료 모습

개인보호구 탈의 순서

	1. 장갑을 벗는다.
	2. 신체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가운을 주의하여 탈의한다.
	3. 손 위생을 시행한다. -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40~60초간 손 씻기 - 또는 알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20~30초간 손 씻기
	4. 고글이나 안면보호구를 제거한다.
	5. 마스크 전면부를 만지지 말고 뒤쪽의 끈 부분을 잡아 마스크를 제거한다.
	6. 손 위생을 시행한다. -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40~60초간 손 씻기 - 또는 알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20~30초간 손 씻기

손 위생(hand hygiene) 방법

① 청소 및 환경 소독 후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소독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알콜 손 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비누를 이용한 경우 30초 이상 손 씻기

끝.

붙임 5 | 일상 소독 방법(예시)

1.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페트병을 이용하여 소독제 희석액을 만든다.

준비물	
	· 차아염소산나트륨(500~1000*ppm) · 500ml 페트병(잘 씻고 건조한 병), 계량컵 · 종이타올 · 종량제봉투(버리기 쉽도록 쓰레기통에 씌워놓기) · 일회용장갑, 고무장갑, 마스크 및 방수앞치마 등 * 일반 표면소독은 500ppm, 화장실은 1,000ppm 권장

※ 5% 차아염소산나트륨 원액을 사용하여 0.1%(1000ppm) 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만드는 경우

· 5% 원액 10mL을 페트병에 붓는다.

· 찬물을 더해 500mL로 채운 후 뚜껑을 닫아 잘 섞는다.

2. 환기를 하면서 자주 접촉하는 장소, 화장실 표면을 소독한다.

변기 | 수도꼭지 | 침대난간 | 전화기 | 문고리, 창틀 등 | 컴퓨터, 마우스

그림출처: www.cloroprofessional.com

* 금속표면은 알코올(70% 에탄올)을 이용하여 소독

· 소독약을 적신 종이타월로 닦은 후 일정시간 이상 유지한 후 물을 적신 종이타월로 닦는다.

· 사용한 일회용 도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소독액을 뿌린 후 밀폐시켜 처리한다.

3. 충분히 환기 시킨다.

4. 청소 · 소독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씻기를 한다.

※ 주의사항

- 문 손잡이 및 화장실과 같이 자주 닿는 표면의 경우 가정에서는 하루 1회 이상, 공공 장소 등 다중이용시설 등은 하루 1회 이상 소독(접촉이 빈번한 표면은 더 자주 소독)
- 표면이 이물질로 오염된 경우 소독제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소독 전에 세제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

붙임 6 | 확진환자 운송 차량의 청소·소독

※ 코로나19 의사환자 또는 확진환자가 의료기관 진료시 이동수단으로 이용한 차량 청소 및 소독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

1. 최소한 교대 시작과 끝에서 환자가 차량에서 흔히 접하는 표면을 깨끗이 소독한다.

2. 적절한 환기 제공을 포함하여 세척 및 소독 절차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준수한다.

3. 차량 청소시 문과 창문이 열어야 한다.

4. 소독안내 지침에 따라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 필요한 다른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가능한 경우 일회용 가운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5. 차량 내부의 단단한 비 다공성 표면 (예 : 단단한 시트, 팔걸이, 도어 핸들, 시트 벨트 버클, 조명 및 공기 조절 장치, 도어 및 창, 손잡이)은 특히 더러워져 있으면 표면에 비누와 물로 청소 후 소독한다.
   - 소독은 환경부의 승인·신고 소독제를 사용하며 적용 및 적절한 환기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설명서를 따르며 제품의 유효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한다.
   - 만약 해당 소독제가 없으면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알콜(에탄올 70%이상)을 사용하며 이때 다른 세척제와 혼합하지 않는다.

6. 직물 시트와 같은 부드럽고 다공성인 표면의 경우 눈에 보이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해당 표면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적절한 클리너로 청소한 후 다공성 표면에 적합하고 환경부의 승인 · 신고 소독제를 사용한다.

7. 차량에 사용되는 태블릿 또는 터치스크린과 같이 자주 접촉하는 전자기기 표면의 경우 눈에 띄는 먼지를 제거한 다음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청소 · 소독하며 설명서가 없는 경우 알코올을 함유한 물티슈 또는 알코올(에탄올 70%이상)을 사용하여 소독한다.

8. 차량 청소 및 소독에 사용되는 일회용 개인보호구는 청소 후 제거 및 폐기해야한다.
   - 방수용 장갑 또는 개인보호구를 탈의한 후 비누와 물로 즉시 손을 씻거나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손 소독제를 사용한다.

붙임 7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20.5.20.)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코로나19 살균 · 소독제품 오 · 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 】

◆ 일상생활과 경제 · 사회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을 지속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5.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 · 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 **(인체에 무해한 성분?)**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 · 소독제는 없습니다.

- 모든 살균 · 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 · 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부 승인 · 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 해당 용도로 소관부처에서 승인 · 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살균 · 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물체용 살균제를 몸에 직접 바르거나 식기 소독용으로 사용하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가능한 환경부 승인 · 신고된 살균 · 소독제는 WHO, E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 유효성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 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3 **(공기를 소독한다?)**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 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 '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 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4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 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 · 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5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 · 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 (소독시 보호장비) 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소독 후 조치) 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영유아 등 노약자)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헝겊에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20.5.2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4판) 붙임7로 배포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코로나19는 새로운 바이러스로서 소독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으므로, 본 지침의 내용은 유사한 형태의 코로나바이러스(사스(SARS) 및 메르스(MERS) 등)에 효과적인 소독제의 유효성분 및 함량 등을 바탕으로 제시된 자료이며 동 세부지침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목적과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기간에 한하여 유효하게 적용되는 지침임

1. 살균·소독제 사용 전 주의사항

- 제품의 유효성분을 미리 확인하고 성분별 유효농도(표 1)에 맞게 사용할 것
- 유효성분의 유해성(표 4)을 확인하고, 특히 제품별로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사용할 것
- 희석이 필요한 경우 눈, 코, 입, 피부 등 인체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환자 이용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4판)」(이하 「소독 안내」)의 「Ⅱ. 소독 시 준비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직전에 희석할 것
- 환자가 이용하는 공간의 살균 · 소독의 경우 「소독 안내」의 「Ⅲ.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방법」및 붙임 4의 환자가 거주한 가정에서 소독하는 방법을 준수하고, 일상적인 지역사회 소독은「Ⅳ. 일상 청소 · 소독 방법」을 따를 것
- 다른 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 것.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할 것
- 제품 사용 시 피부와 눈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할 것. 보호장비를 갖출 것.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할 것
- 바이러스로 오염된 바닥 또는 물체 표면 소독 시, 분사하지 않고 소독액을 천에 적신 후 충분한 소독 효과를 얻기 위해 일정시간 이상 접촉시간 필요(제품별 사용설명서 참조)

2. 코로나19 소독용 살균·소독제의 유효성분 및 유효농도

- 표 1은 국내 · 외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소독효과가 있다고 권고되는 소독제의 유효성분 및 유효농도를 제시한 표임

표 1.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성분별 유효농도

분류	대표 유효성분	유효농도
염소 화합물	차아염소산나트륨	0.05 ~ 0.5% (1,2,3,4) (유효염소량 500 ~ 10,000 ppm)
	아염소산나트륨	0.23% (3,4)
알코올	에탄올	70% ~ 90% (2,3,4)
	이소프로판올	50% (3,4)
4급암모늄 화합물	벤잘코늄염화물	0.05% ~ 0.5% (1,3,4)
과산화물	과산화수소	0.5% (4)
	과아세트산	0.26% (5)
페놀 화합물	클로록실레놀	0.12% (4)

1) 질병관리본부, 2020. 2020년 호흡기감염병 관리지침(성홍열, 레지오넬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2) WHO, 2020.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during health care when novel coronavirus infection is suspected

3) ECDC, 2020. Interim guidance for environmental cleansing in non-healthcare facilities exposed to 2019-nCoV

4) NEA, 2020. Interim list of household products and active ingredients for disinfection of the COVID-19 virus

5) Abreu. A. C. et al., 2013. Current and emergent strategies for disinfection of hospital environments. J. Antimicrobial Chemotherapy, 68, 2718-2732.

3. 코로나19 방역용 및 자가소독용 사용가능한 살균소독제

- (방역용 소독제) 전문 방역자들이 감염병예방을 위해 소독하고자 하는 경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으로 승인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자가소독용 살균제)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환자, 일반 소비자들이 자가소독* 등 목적으로 살균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물체표면 또는 환경에 대한 소독을 말하며,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 또는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뿐 아니라 식품이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용기의 소독용은 제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으로 신고된 제품으로 표1의 유효농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일상생활에서의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음

4.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제품 목록(환경부 승인 제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WHO 등에서 권고한 코로나바이러스 소독가능한 유효성분을 유효농도 이상 포함하고 있는 제품들임

- 인체 또는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품에 사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며, 식품 또는 식품용기 등의 소독에 사용할 수 없음

-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환경부 승인제품[3] 목록은 환경부 초록누리(ecolife. me.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5. 코로나19 자가소독용 살균제 목록(환경부 신고 제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혹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중에서 WHO 등에서 권고한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유효성분을 유효농도 이상 포함하고 있는 제품들임

  * 제품목록에 없는 살균제라도 자가검사번호가 있는 제품 중 「표1.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성분별 유효농도」를 충족하는 경우, 사용 가능하며 제품목록은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임

- 살균제를 제조 · 수입업체가 제시한 대표 용도별로 일반소독용, 화장실용, 섬유세탁용, 주방용, 기타용으로 구분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자가소독용으로 사용가능한 살균제이며, 다용도인 제품도 많으므로 구체적 용도는 제품별로 확인할 것

-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하는 환자나 자기격리 중인 자가격리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소독하는 경우에도 자가소독용 살균제의 사용 가능

- 코로나19 자가소독용 환경부 신고제품 중 일반소독용 살균제, 화장실용 살균제, 섬유세탁용 살균제, 주방용 살균제, 기타 살균제 목록은 초록누리 (ecolife.me.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섬유세탁용 살균제 제품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를 함유한 제품으로 70°C 이상의 고온에서 세탁할 때 사용할 경우, 위해가스 발생 및 옷감손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60°C이하에서 사용

3) 환경부 승인 소독제 중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 목록임. 정확한 제품명은 "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로 확인

6. 환경소독제 유효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4]

염소계 소독제 (Chlorine compounds)

- 염소계 소독제의 유효성분에는 차아염소산,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 칼슘,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NaDCC)이 포함되며, 대표적 물질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가정용 락스의 주요 성분임

- 색 또는 미황색의 투명한 액체이거나 백색의 정제로서 특이한 냄새 있음

- (소독 방법) 유효염소량 0.05~0.5%, 농도에 따른 표면 접촉 시간은 5페이지 참조
  - 가정용 락스는 일반적으로 4.5% 또는 5%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
  - 0.1% 용액 제조하려면 물 1 L(1000 mL)에 5%의 락스 20 mL를 첨가하며, 희석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찬물에 희석할 것.
  - 권장 농도보다 더 낮은 농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소독제를 권장시간보다 긴 시간 접촉시킬 것
  - 혈액·체액 오염이 있는 경우, 0.5%의 고농도 용액으로 소독 필요

- (주의 사항) 희석된 차아염소산은 효과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 직전에 희석해서 사용할 것. 섬유 변색 및 금속표면 손상에 주의할 것

- (위해성) 피부 및 눈 자극(비가역적 손상)이 발생 가능하며, 흡입에 의한 독성이 있음

- (응급조치) 충분한 물로 씻은 후, 이상이 계속되는 경우, 의사와 상담

4) CDC. 2008. Guideline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2008 (update May 2019)

알코올계 소독제

- 알코올계 소독제의 유효성분에는 에탄올(에틸알코올), 이소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등이 주요 성분임
- 무색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 있음
- (소독 방법) 에탄올 70~90% 또는 이소프로필알코올 50%[5], 1분 이내 처리
- (주의 사항) 빠르게 휘발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짧은 시간 처리해야 하는 소독에 적합함. 플라스틱 또는 고무 재질 손상에 주의할 것. 접착제 등을 녹일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위해성) 피부자극 및 심각한 눈 자극(비가역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 (응급조치) 충분한 물로 씻은 후, 이상이 계속되는 경우, 의사와 상담

4급 암모늄화합물계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소독제

- 4급 암모늄화합물은 질소 원자에 4개의 알킬 그룹이 결합된 질소화합물염을 통칭
- 4급 암모늄화합물계 소독제의 유효성분에는 벤잘코늄염화물(염화-n-알킬벤질 디메틸암모늄 또는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 암모늄, 염화벤제토늄 등이 대표적임
- 주로 무색 또는 미황색의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 있음
- (소독 대상) 바닥 · 가구 및 플라스틱 등 단단한 비다공성 표면 또는 물체 소독
  - 섬유 등에 사용 시, 침전형성 등으로 소독효과 급격히 감소 및 지속적 노출 일으키므로 사용 권장하지 않음
- (소독 방법) 4급 암모늄화합물(0.05% 이상 함유) 소독제를 10분 이상 접촉시킬 것
  - 4급 암모늄화학물이 다른 소독제성분(알코올 등)과 함께 혼합된 경우, 더 낮은 농도에서도 소독효과를 나타냄[6]
- (사용 전 확인사항) 소독하고자 하는 표면을 깨끗이 닦을 것
  - 이 성분은 유기물, 양이온 계면활성제, 비누, 경수 등에 의해 쉽게 비활성화 됨
- (위해성) 피부 및 눈 자극(비가역적 손상)이 발생 가능하며, 흡입에 의한 독성이 있음
- (응급조치) 충분한 물로 씻은 후, 이상이 계속되는 경우, 의사와 상담

5) ECDC, 2020. Interim guidance for environmental cleansing in non-healthcare facilities exposed to 2019-nCoV

6) Manfred H. Wolff et al., 2005. Environmental survival and microbicide inactivation of coronavirus, Coronavirus with Special Emphasis on First Insights Concerning SARS, 201-212

과산화물계 소독제

- 과산화물계 소독제의 유효성분에는 과산화수소, 과아세트산(과초산), 옥손(과황산화합물) 등이 대표적임
- 주로 무색 투명한 액체로서 냄새가 거의 없거나(과산화수소), 강한 식초 냄새(과아세트산)가 있음
- (소독 대상) 바닥 · 가구 및 플라스틱 등 단단한 비다공성 표면 또는 물체의 소독
- (소독 방법) 과산화물계 소독제를 상온에서 5분 이상 접촉
- (사용 전 확인사항) 희석 후 빠르게 효과가 떨어지므로 사용 직전에 희석해서 사용할 것. 금속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 할 것
- (위해성) 피부 자극(부식성, 화학화상) 및 눈 자극(비가역적 손상)이 발생 가능하며, 경구 및 흡입 노출에 의한 급성독성이 있음
- (응급조치) 충분한 물로 씻은 후, 이상이 계속되는 경우, 의사와 상담

페놀계 소독제

- 과산화물계 소독제의 유효성분에는 클로록실레놀 등이 대표적임
- 주로 옅은 황색의 액체로 약간의 특이적 냄새가 있음
- (소독 대상) 바닥 · 가구 및 플라스틱 등 단단한 비다공성 표면 또는 물체의 소독
- (소독 방법) 클로록실레놀 0.12%, 30초 이상 접촉[7]

7) Dellanno, C, Vega, Q.,& Boesenberg, D. 2009. The Antiviral action of common household disinfectants and antiseptics against murine hepatitis virus, a potential surrogate for SARS coronavirus.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37(8), 649-652

7. 살균·소독제 유효성분별 유해성 정보

-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에 함유된 살균 · 소독제 성분은 올바른 사용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음
  - 단, 사용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사용하였을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호장구를 갖추고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잘 지켜 사용할 것

표 2. 살균·소독제 유효성분별 유해성 정보[8)]

분류	대표 유효성분	유해성 정보
염소계 화합물 (차아염소산류)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 이염화이소시아뉼산 나트륨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고농도 차아염소산은 화학적 화상을 유발할 수 있음 · 락스 등은 산성세정제나 합성세제와 혼합하여 사용 시, 유해가스 발생 · 강산과 격렬히 반응하여 유독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암모니아, 아민 등 환원제와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 · 금속 표면을 부식시킴
알코올	에탄올(에틸알코올) 이소프로필알코올 (이소프로판올)	·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음 · 눈과 점막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 고농도 알코올 증기 흡입 시, 호흡기 자극 유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강산화제와 격렬히 반응할 수 있음 · 에탄올 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화기를 사용 중인 실내에서는 사용을 피하고, 사용 후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
4급 암모늄화합물	벤잘코늄염화물	지속적으로 접촉 시,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흡입으로 인한 호흡 곤란 등 급성독성 일으킬 수 있음
과산화물	과산화수소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는 피부와 눈에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과산화수소 소독제는 락스 등 염소계 표백제나 다른 세정제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함 반응성, 폭발성
페놀화합물	클로록실레놀	피부와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에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끝.

8)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ranch, Labour Department, 2007. Chemical Safety in the Workplace: Guidance notes on safe use of chemical disinfectants.

붙임 8 |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시 주의 사항

■ 효과

-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의 주성분)은 미생물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박테리아, 곰팡이 및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 효과적인 강력한 소독제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효과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여 널리 사용됨
  - 따라서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환경 소독에 권장
- (단점)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점막, 피부 및 기도를 자극하고 열과 빛에서 분해되어 다른 화학 물질과 쉽게 반응하므로 주의해서 사용
  - 잘못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떨어지고 부상의 위험이 있음
  - 과도하게 사용하면 환경 오염 위험이 있음

■ 도구 및 장비

- 가정용 차아염소산나트륨, 계량 도구, 용기 및 개인보호구와 같은 필요한 모든 도구와 장비 준비

■ 희석액 준비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희석하고 사용
- 점막, 피부 및 기도를 자극하므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희석액 제조 및 사용시 적절한 개인 보호구(예 : 방수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막힌 신발, 장화, 고글 등)를 착용
- 뜨거운 물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의 활성 성분을 분해하여 소독효과가 없게 되므로 희석 시 냉수 사용
- 상황에 따라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올바르게 희석하여 사용
  - * 일반적인 가정용 청소 및 소독 : 500~1000ppm
  - * 환자 이용 공간 및 구토·배설물·분비물로 오염된 표면 또는 물품: 1,000ppm
  - * 환자 혈액·체액 유출로 오염된 표면 또는 물품 : 5,000ppm

유효염소농도 (ppm)	차아염소산나트륨 최종 농도 (%)	차아염소산나트륨:물 혼합 배율	
		4% (40,000ppm) 원액	5% (50,000ppm) 원액
500 ppm	0.05%	1:80	1:100
1,000 ppm	0.1%	1:40	1:50
5,000 ppm	0.5%	1:8	1:10

• 차아염소산나트륨 첨가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계량스푼 또는 계량컵을 사용

• 소독 후 비누와 물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시 주의사항

• 금속, 양모, 나일론, 실크, 염색 된 직물 및 페인트 표면에 사용 금지

• 희석액이 묻은 손으로 눈을 만지지 말기

-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물로 15분 이상 헹구고 의사와 상담

•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다른 가정용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하고 위험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섞지 말 것

*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화장실 청소에 사용되는 산성 세제와 혼합하면 독성 가스가 생성되어 사고나 부상 발생

** 필요한 경우 소독제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기 전에 세제를 먼저 사용하고 물로 철저히 헹굼

• 희석되지 않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햇빛에 노출 될 때 유독 가스를 방출하므로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되므로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최근에 생산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구입

* 효과적인 소독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가 증가하므로 제조 후 24 시간 이내에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사용 후 잔량은 폐기함

• 표면에 유기물이 있는 경우 효과가 저하되므로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하기 전에 표면의 유기물을 깨끗이 제거해야함. 끝.

부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3판) 발췌

〈환경부 3.2.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

1 격리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 발생 및 보관 】

• (배출) 배출장소에서 바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병원내 이동 최소화)하고 밀폐(전용봉투+전용용기 2중 밀폐: 붙임2 참조)

* 폐기물 투입 전과 밀폐 후 소독 처리

** 전용봉투가 찢어지거나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없는 의료진 도는 폐기물 수거업체 등이 사용한 개인보호구 (마스크, 보호복) 등에 대해, 합성수지 전용용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합성수지 전용용기 대신 골판지 전용용기를 사용할 수 있음

- 확진환자의 남은 음식물도 구분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용기에 투입 후 처리

※ 병원 전체가 격리(공동격리)되어 발생 음식물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소독 후 일괄 소각 처리(지자체 공공소각장 또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 가능 직물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온수세탁 후 재사용

〈참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사 고수습본부)

•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커튼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온수세탁

•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베개, 쿠션 또는 카펫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

⇒ 자세한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소독 안내 지침 참고

• (보관) 해당 폐기물은 당일 반출 원칙, 병원 내 보관 최소화

- 병원내 보관 시 지정된 보관창고에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 조직물류 형태는 전용 냉장시설(4℃ 이하)에 반드시 보관하고, 부패위험이 없는 격리폐기물도 최대한 냉장보관이 원칙

- 보관창고는 매일 소독하고,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은 구조 및 외부인 출입 제한

【 수집 · 운반 】

• 전용용기에 밀폐 포장한 상태로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지 않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직송하여 소각처리

• 밀폐된 적재함에서 운반 중 4℃ 이하 유지, 적재함 사용시 마다 약물소독

【 소각처리 】

• 해당 폐기물 입고 즉시 전용용기에 담긴 상태로 바로 소각로 투입

※ 처리 상황과 최종 처분여부는 환경공단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 현행규정보다 강화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관리방안 】

구분	배출자 보관	운 반	처 리
격리폐기물 현행규정	◦ 7일까지 보관 ◦ 합성수지 전용용기 ◦ 전용 보관창고 (조직물류 냉장보관) ◦ 보관창고 소독	◦ 냉장운반 ◦ 임시보관(2일)	◦ 처리기한 2일 ◦ 전용보관 창고 (조직물류 냉장보관)
격리폐기물 관리강화	◦ 당일 위탁처리 (1~2일 이내 보관) ◦ 냉장보관 원칙 ◦ 전용용기 투입전·후 소독	◦ 임시보관 금지, 당일 운반 ◦ 사용시 마다 차량약물 소독	◦ 당일 소각처리

※ 단, 특별자치도와 육지와 연결이 되지 않은 도서 지역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 보관(4일 이내)하되 신속 운반·처리(2일 이내)

2 생활치료센터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 확진환자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격리의료폐기물로 ① 소독 · 밀봉 배출, ② 상시소독, ③ 전량 일일소각 처리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생활 및 의료지원이 실시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으로 간주

- (배출) 환자가 직접 폐기물을 소독하고 전용봉투 및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밀봉한 후 문전 배출

- (수거·보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관리인력이 문전 수거 및 소독 후 지정한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

*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별도 공간, 임시 컨테이너 등)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매일 1회 이상 약물로 소독하여야 함

- (운반·처리) 지정된 수집·운반업체에서 보관장소에 보관된 폐기물을 지정된 처리업체에 당일 운반하여 소각처리

• 확진환자와의 접촉 없이 생활치료센터 운영 ·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일반 의료폐기물로 강화하여 소각처리

- 센터 내 격리의료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소독·밀봉하여 전량 일일소각 처리하되 합성수지 전용용기가 아닌 골판지 전용용기 사용

• 생활치료센터 전담 수거 · 처리업체 지정 · 관리

- 유역·지방환경청은 생활치료센터 전담 수거·처리업체를 지정하고, 일일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확인 후 환경부로 보고

3 자가격리자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 자가격리자에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을 무상지급

- 유역·지방환경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봉투형 전용용기, 소독약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 및 배출요령에 관한 매뉴얼* 보급(붙임4)

* 소독방법, 폐기물 투입 및 보관·처리방법, 확정판정 시 협조요청 사항 등

• 발생된 폐기물을 매뉴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출 · 처리

① 증상 미발생 시 발생된 폐기물의 경우

- (배출) 배출자제를 원칙으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배출하며, 자가 격리자는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고 보건소에 연락하여 배출

※ 전용봉투가 없는 경우 종량제봉투를 활용하여 2중 밀폐

- (수거·처리) 자가격리자를 모니터하는 지자체 보건담당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군·구 생활폐기물 담당부서(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수거하여 생활폐기물로 소각처리

※ 다만 지자체 여건상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이 소각이 아닌 매립 등의 방식일 경우 기존 방식으로 안전하게 처리

②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또는 확진판정 받은 자가 격리장소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의 경우

- (배출)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보관

- (수거·처리) 보건소로 폐기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보건소에서 계약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통해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수거하여 당일 소각처리

※ 발생량 과다로 당일처리가 어려운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지방(유역)환경청에 연락하여 처리

※ 자가격리가 해제된 경우(음성 판정)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중인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여 소각처리

④ 확진환자 방문지 및 다중이용시설 폐기물

- 환자에 노출된 지역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적정 소독 처리한 후, 다음날까지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권고하며, 관련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밀폐 · 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소독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중밀폐 · 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자가격리자 폐기물 보관·처리 체계〉

폐기물보관 〈자가격리자〉	폐기물 배출이 불가피한 경우 〈자가격리자 → 보건소 담당자〉	⇒	처리요청 〈보건소 담당자 → 생활폐기물 담당자〉	⇒	수거·처리 〈생활폐기물 담당자〉
• 전용봉투에 폐기물투입 보관 • 소독실시 • 격리해제(음성판정)시까지 보관원칙	• 전용봉투 소독후 종량제봉투 2중 포장 후 다시 소독 (자가격리자)		• 폐기물 수거 또는 처리요청(배출위치, 시간 등 통보)		• 폐기물 수거 시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 철저이행 • 공공소각장 등에서 조속히 처리

증상의심시 /확진판정시 〈보건소 담당자〉	⇒	격리장소 소독 〈보건소 담당자〉	⇒	수거·처리 〈보건소 담당자, 지방환경청〉
• 격리자 병원이송 • 관할 지방환경청 신속 연락·통보		• 격리장소 등 소독		• 보건소 소독 후 폐기물 반출 • 보건소계약 의료폐기물처리업체 연락, 수거·처리(불가피한 상황 시 환경청 지정 업체 수거·처리) •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 처리

⑤ 폐기물 종사자 지원 및 사고예방

- (폐기물 종사자) 의료폐기물 지도 · 단속 요원, 코로나-19 폐기물 수집 · 운반, 처리업체 종사자는 개인 보호구* 철저 사용으로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 개인 소독약품, 마스크, 고글, 보호장갑 및 일회용 가운 등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보호장비 착용

- (환자이송 119 구급대 등) 코로나-19 의심환자 등의 수송에 따라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시 · 도)
- (운송사고 예방) 의료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소독 강화, 안전운행 수칙 준수 및 사고 예방관리 철저 (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 (특별점검) 기관장 전담제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 종합병원 : 유역·지방환경청
  - 종합병원 외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지자체
  - 수집·운반업체, 소각처리업체 : 유역·지방환경청 1:1 전담 관리

부록 붙임1 | 코로나바이러스-19 의료폐기물 관리체계도

〈 관리체계도 〉

한국환경공단

- 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모니터링

코로나-19 폐기물관리 종합상황반 (환경부)

- 코로나-19 폐기물 처리상황 총괄관리
- 자가격리폐기물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

- 환자발생 및 병원 등 실시간 공유
- 폐기물 안전관리 협력·지원 체계 구축

시 · 도

- 환경미화원 보호장비 및 소독용품 지원
- 자가격리 장소(양성확진시) 소독 등 대책강구

코로나-19 폐기물관리 종합상황반 (환경부)

- 전용봉투·소독제 등 구매
- 비상시 폐기물 처리업체 연결 지원
- 자가격리폐기물처리
- 폐기물처리업자 재정지원 심사 등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

- 자가격리폐기물 처리업체 지정 협조
- 수집·운반·처리과정 안전관리 대책 수립·추진 등

한국환경공단

- 자가격리자에게 폐기물 전용봉투, 소독약품 제공
- 소독시 유역·지방환경청 사전통보 후 관련 폐기물 처리

⇧

시·도 및 시·군·구 코로나-19 대책본부

부록 붙임2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개인보호장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합성수지 전용용기

골판지 전용용기

개인보호장비

장갑 보호복		
마스크		
고글/안면보호대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물품]

-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물품은

① 폐기물 소독제 ②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주황색 봉투) ③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 ④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 입니다.

[생활치료센터 격리자 발생 폐기물 배출방법] – 격리의료폐기물

- 격리실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분리배출 필요 없이 제공되는 전용봉투(주황색 봉투)에 담기 전 전용봉투 내부를 1차 소독, 폐기물을 담은 후 2차 소독하여 반드시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묶어주시고,
- 제공되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에 전용봉투(주황색 봉투)를 넣고,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의 뚜껑을 닫기 전 소독 후, 뚜껑을 닫아 밀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폐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은 격리실 문 앞에 배출하기 전 외부 전체를 1회 더 소독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의 뚜껑이 완전히 닫힌 후 배출되어야 수거가 가능하며,
- 배출된 폐기물은 매일 수거자가 수거하여 '생활치료센터' 내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주황색 봉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

[생활치료센터 운영인력 등 발생 폐기물 처리방법] – 일반의료폐기물

- 운영인력 사용공간 및 숙소 등 발생 폐기물, 확진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폐기물(도시락 및 구호물품 박스 등)은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하며,
- 분리배출 없이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주황색 봉투)에 넣고 밀봉하기 전 소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소독 후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전용봉투(주황색 봉투)를 묶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에 넣어 밀봉해야 합니다.
- 밀봉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는 수거 전 외부 전체를 1회 더 소독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된 폐기물은 매일 수거자가 수거하여 '생활치료센터' 내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주황색 봉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

[생활치료센터 내 폐기물 임시보관 및 운반 · 소각 처리방법]

- 별도 (임시)보관장소는 1회/일 소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소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의료폐기물은 매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수집 · 운반, 소각)에서 운반 및 소각처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관련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대응 안내서

발행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발행일 2020년 12월 21일
편 집 템플스테이팀
디자인 · 제 작 (주)도반미디어
간행물등록번호 010110-01-2020-143
문 의 02-2031-2035